#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06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이헌승·임이자·박덕흠

서일준 • 백종헌 • 주호영

김도읍 • 서범수 • 윤상현

정연욱 • 박성훈 • 이상휘

김 건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된 면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 과징금 상한을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음.

이로 인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에 미달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는 중소 유통업자에게는 대규모유통업자 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 과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 법률 제 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제35조(과징금) ①
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	
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	
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u>5억원</u> 을 초과하지	<u>10억원</u>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